



제 4 2 2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24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6
가. 개요	6
나. 한지 산업 지원 정책·사업 추진 현황	9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정의	12
나. 한지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16
다. 실태조사	20
라. 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22
마. 전담기관	24
바. 한지전시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26
사. 보칙적 규정	28
아. 부칙	31
※ 참고자료	
1. 한지 분야 육성지원 사업 주요 추진성과(2024년)	32
2.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3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12. 18.

다. 회 부 일: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한지(韓紙, Korean paper)는 닥나무(paper mulberry) 인피섬유를 주 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 고유의 종이로서 주로 정보저장 기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한지는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바, 앞으로의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한지의 활용 관련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은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한지·한지제품·한지문화산업에 대한 정의, 한지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 관련 실태조사, 산업적 지원(창업, 제작, 원재료 생산, 시설, 연구개발, 국제협력·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지원, 한지전시관 설치·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등 통상적인 산업진흥 법률과 유사한 구조로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조(정의)	제11조(한지전시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5조(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4조(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
제6조(실태조사)	제15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7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16조(청문)
제8조(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조(한지의 연구개발 촉진 등)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총괄적 검토

가. 개요

- 한지(韓紙)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기법으로 제조된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하고, 친환경 인테리어·인체친화형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평가받아 산업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한지는 제조 과정에서 장인의 기술과 지식, 마을 주민들의 품앗이가 더해져 우리나라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정부는 2024년 4월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¹⁾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한지산업은 전문인력 확보 및 닥나무 수급의 어려움, 전통계승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한지산업은 1970년대 양지가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면서 급속히 위축되었고 전통적 방식의 한지산업은 인력난, 기술 전수의 난항으로 쇠퇴하면서, 한지 제조업체는 1970년대 600개소에서 1984년에는 72개소로 감소²⁾하였으며, 최근 조사³⁾에 따르면 2022년 한지 제조업체는 26개소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 동 사항은 유네스코의 검토·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에 개최되는 제2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舊)문화재청 보도자료, 2024.4.1.)

2) 「한지의 발자취」 김영연, 2005, 원주시

3) 「2022 한지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

- 2022년 운영 중인 26개 업체의 기업형태는 주로 개인사업체(22개 84.6%) 형태로서,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2017년 10억 6,400만원에서 2022년 8억 8,200만원으로, 한지 평균 단가는 2019년 15,942원에서 2022년 15,705.8원으로 236.2원 감소하였으며,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업체가 8개로 영세한 수준임⁵⁾.

○ 한편,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⁶⁾이 2015년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한지는 공예산업의 한 분류로 포함⁷⁾되어 있지만,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에는 전통한지의 진흥을 위한 별도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한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4)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2개소, 강원도 2개소, 충청북도 1개소, 전라북도 16개소, 경상북도 5개소임.(기계한지 업체 제외)

5) 「2022 한지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

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공예산업 특수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50	종이/한지	500	닥나무 생산업
		501	종이/한지공예 제조업
		502	종이/한지공예 유통업

자료: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3.12.

- 이에 제정안은 한지에 관한 개별법을 통해 한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책을 규정하여 한지문화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 조문별 검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안 제2조 한지제품의 정의, 안 제8조 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주체와 협의 대상, 안 제9조 전담기관 지정의 조제목화 등에서 일부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지의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면서, 전통문화는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고 정책 수요가 달라 개별 법률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지 관련 개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서 2017년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423) 및 2021년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943)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각각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8) 현재 각각의 전통문화 관계 법률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문체부, '07), 「전통무예진흥법」(문체부, '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부, '10) 「김치산업 진흥법」(농림부, '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국토부, '14), 「공예문화산업진흥법」(문체부, '15), 「한식진흥법」(농림부, '19), 「국악진흥법」(문체부, '23) 등이 마련되어 있음.

나. 한지 산업 지원 정책 · 사업 추진 현황

1) 중앙정부

- 현재 한지 관련 주요 정책으로서, 2007년 舊)문화관광부는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지 분야 추진과제는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한지장인 후계자 양성’, ‘한지 공공소비 활성화 지원’, ‘한지상품 개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4개 과제가 선정되었음.
- 정부는 동 계획의 후속 정책으로서 2012년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2015년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2024년 ‘전통문화 산업 진흥 기본계획’⁹⁾ 등을 수립하였고, 2024년 기본계획에는 ‘한지 인지도 및 가치 제고’,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발전 기반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참고로, 한스타일 육성지원 내 한지분야 지원예산은 14억 5,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유사한 규모로 편성 · 집행되고 있음.
- 한지산업은 전통분야 산업의 일종으로,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로 볼 수 있으나,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닥나무 식재 및 육성 정책, 한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 복원용 한지 기술연구, 한지 R&D 연구개발 등 부처 소관에 따라

9) 2023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2024. 9. 시행)에 따라 수립 · 시행되었음.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4년 한지 관련 R&D 사업]

주관부처	과 제 명	용역금액 (백만원)
문화체육 관광부	전통한지 원소재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한지의 신산업화 기술 개발	148
산림청 (국립산림 과학원)	한지 제조를 위한 섬유화 처리별 물성 시험편 제조 및 분석	35
	한지의 광학적 특성 연구	30
	제조법 미전수 한지 복원(3)	30
과기 정통부	한지 등급설정 표준화를 위한 장섬유 분석 기술 플랫폼 개발 및 장기보존성 응용	98
	전통한지 세계화를 위한 친환경 소수/발수성 및 스마트 감성 인터페이스 원천기술 개발	60
	전통 수록 한지 실용화 및 고급화 기술 개발	65
	CD/MD 인장강도 비율 90% 이상, 장섬유 50% 이상의 생분해성 섬유 혼합 한지 소재 제조공정 개발 및 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응용제품 개발	67
	한지와 면상발열체가 결합된 고전도성 카본시트 제조 및 디바이스 구현	465
	기계한지 기반의 wet-laid 공정을 이용한 의료용 멸균 부직포 개발	82
중소벤처 기업부	접착강도 2.5kgf/inch 이상의 내구성이 우수한 한지 필름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제품화	124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한편,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한지장(韓紙匠)’은 전통기술
 - 공예로 분류되어 2005년 국가무형문화재¹⁰⁾ 제117호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총 6명의 장인이 한지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

10)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5.7.)에 따라 현재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지방정부

- 한지산업은 주원료가 닥나무 등으로 특정됨에 따라 재료를 조달하기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한지산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한지 분야 조례 제정 현황]

지역명	조례명	제정일
원주	원주 옷 · 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2007.07.20.
원주	원주시 옷 ·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08.11.20.
완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	2010.04.29.
원주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09.15.
괴산	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2012.10.12.
전주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6.05.30.
전주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	2017.04.12.
전주	의령 전통한지 육성 · 지원 조례	2017.04.12.
안동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1.16.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13.
경상북도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2019.09.19.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18.
경상남도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4.03.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각 조례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닥나무 등의 식재관리, 창업 및 생산시설 개선 지원, 제품 개발 및 홍보, 계승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

1) 제정안 요지

- ‘한지’, ‘한지제품’,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한지제품”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제조기술에 근거하여 제작한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한지문화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주: 인피섬유(靛皮纖維, bast fibre)는 식물체 내의 줄기 형성층의 바깥쪽에 남아 있는 조직인 인피에서 수집된 섬유로, 한지의 주원료임.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2조는 ‘한지’, ‘한지제품’, ‘한지문화산업’ 등에 관한 정의 규정으로, 각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한지 등에 관한 현행 지자체 조례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 한지와 관련된 현행 법령은 주로 각 지역 내 한지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안동시 등이 한지산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이들 조례는 한지를 ‘닥나무 인피섬유(껍질의 섬유)를 주재료(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한국 고유의 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¹¹⁾.

○ 다만, ‘한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 조례에서 정의한 바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한지의 개념이 법률로서 처음 정의되고 이에 따라 규율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3 한지백서」¹²⁾는 ‘현재 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한지와 전통한지의 정의에 대한 논의·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백서 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음.

한 지: 닥섬유를 원료로 외발(흘림뜨기), 쌍발(가둠뜨기), 반자동(가둠뜨기)을 사용하여 손으로 뜬 종이 전통한지: 국산 닥섬유 100%를 원료로 외발(흘림뜨기)을 사용하여 손으로 뜬 종이 ※ 외발, 쌍발 등은 닥섬유를 건져 종이를 뜨는 발을 말함.
--

- 한편, 한지는 제조방식에 따라 손으로 직접 뜨는 방식으로서 전통적 수가공에 의하여 제작된 한지인 수초(手抄)한지¹³⁾와 초

11)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은 한지를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 닥나무 껍질 따위의 섬유를 원료로 한다.’로 설명하고 있음.

12) 「2023 한지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4.1.) p.25

13) 수록(手漉)한지라고도 함.

지기(抄紙機, paper machine) 등에 의해 제작되는 기계한지로 구분되는데 제정안의 한지는 기계한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지의 산업적 활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음, ‘한지제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지제품의 의미를 폭넓게 정의하기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제조기술에 근거하여 제작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각 지역의 한지 관계 조례의 정의 조문을 살펴보면, 통상 한지제품을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한지제조 기술을 계승·발전하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경상북도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고유의 한지제조기술을 계승·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에 따르되 고해와 건조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전주한지”란 전주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3.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4. “전주한지장”이라 함은 전주한지의 생산·제조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한지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전주한지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韓紙)란 국내산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한국 고유의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이를 말한다.
2.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한지제조 기술을 계승·발전시킨 제품을 말한다.
3. “한지문화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나. 한지문화산업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1) 제정안 요지

○ 한지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2) 제정안 조문

제5조(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한지문화산업 관련 원재료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한지제품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지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지문화산업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5조는 한지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임.

- 이는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한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마련하여, 종합적·체계적 관점에서의 한지문화산업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한지 및 한지산업 관계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산림청(닥나무 생산), 노동부(명장제도), 과기정통부(한지산업 R&D)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한지와 관련한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제3항¹⁴⁾과 같이 협조 요청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4)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한편, 개정안은 협조 요청의 대상으로 개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등이 있고, 「국악진흥법」, 「미술진흥법」 등의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협조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 개인을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협조요청 대상으로 개인을 규정한 입법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협조요청 대상으로 개인을 제외한 입법례]

「국악진흥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미술진흥법」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이는 산업 분야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보이나, 한지산업의 경우 한지장 등 개인에게 협조 요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아울러, 안 제5조제2항제1호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⁵⁾.

15)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다. 실태조사

1) 제정안 요지

- 한지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안 제6조)

2) 제정안 조문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지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한지산업의 현업규모, 종사자 수 등 한지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통한지·기계한지 업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지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산업 동향 파악 및 정책 자료를 수집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실태조사를 재량규정으로 두고, 시행 주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시행 주기를 법률에 명시한 입법례가 있고, 실태조사 결과는 행정기관 등이 생성·취득·관리하는 공공데이터¹⁶⁾로서, 해당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태조사의 의무/재량 여부, 시행주기, 결과 공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 보임.

[실태조사를 재량규정으로 둔 입법례]

「**밀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둔 입법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시행주기 및 공표의무를 규정한 입법례]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라. 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1) 제정안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제정안 조문

제8조(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한지 원재료 생산 및 수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제품의 제조시설(한지의 제조 및 생산 시설을 말한다) 등의 유지·복구·복원 및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원재료 생산·수급 및 한지제품의 제조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한지의 주재료인 국내 닥나무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수입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한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재료 생산·수급 지원은 필요한 시책으로 보임.

[연도별 닥나무 총생산량과 생산액]

연도구분	총생산량(kg)	총생산액(천원)
2019	15,261	476,533
2020	6,959	257,194
2021	11,569	528,900
2022	1,844	77,558
2023	2,212	98,090

자료: 연도별 「임산물생산조사」, 산림청

- 다만, 문체부가 안 제8조제1항의 지원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를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8조(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u> 전통한지 원재료 생산 및 수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원재료 생산 및 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한지 원재료 생산 및 수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마. 전담기관

1) 제정안 요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닥나무 재배,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의 전담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제정안 조문

제9조(한지의 연구개발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연구개발능력 등을 갖춘 한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9조는 한지문화산업 진흥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한지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문체부는 안 제9조가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임을 고려하여 조 제목을 전담기관의 지정 등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서 ‘닥나무 재배, 한지 디자인 및 상품화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담기관은 조사·연구·개발, DB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제2항과 같이 전담기관의 구체적인 수탁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한지전시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1) 제정안 요지

- 한지전시관·한지체험관 지원, 우수사례 발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2) 제정안 조문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을 한지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지전시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사례의 발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의 생활화·산업

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지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한지문화산업의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한지문화산업 관련 전시회의 개최
4. 한지문화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제14조(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한지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지문화산업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한지전시관 및 한지체험관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한지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들로서, 각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확충 및 사업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다른 산업진흥법과 비교할 때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임.

사. 보칙적 규정

1) 제정안 요지

-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2) 제정안 조문

제1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6조는 전담기관(안 제9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10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위라는 점에서 취소 시 의견 제시 및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보장의 측면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임.
- 다만, 수행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행정절차법」에 청문의 방법과 절차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4(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 가. 인허가 등의 취소
 - 나. 신분·자격의 박탈
 -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 안 제17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조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일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화산업진흥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는 뇌물수뢰, 알선수뢰 등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아. 부칙

1) 제정안 요지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정안 조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은 시행령 정비, 전담기관 지정 등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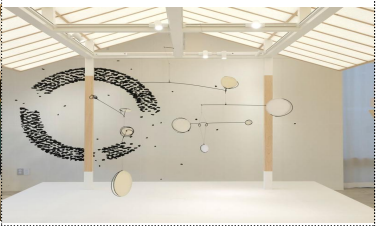
02)6788-5380

참고 1

한지 분야 육성지원 사업 주요 추진성과(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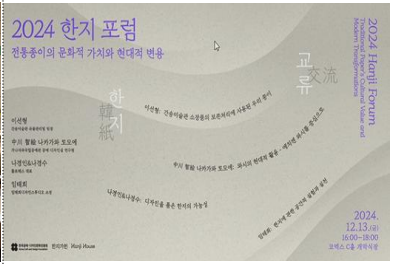
□ 전통한지 활성화 및 신규 수요 창출 지원 확대

- (창작 지원) 한지문화상품 개발 및 한지 활용 시각예술작품 발굴을 위한 '오늘한지창작 공모전' 공모 분야 확대(상품·작품군), 총 17팀 선정*
* 241점 접수, 17팀 선정(14:1) / 제작지원금(30만원), 상금(50~10백만원), 컨설팅 등 지원
- (전시·체험) 한지전시·체험·판매복합공간 '한지가헌' 개편 및 브랜딩 강화(6.18 재개관), 한지 체험프로그램 및 한지사진관 상시 운영 등

■ '한지가헌' 운영' 주요 성과 ('24.12.13. 기준, 16,465명 방문)		
▶(전시) 1층 전시관 확대 개편 및 기획전전을 통한 한지의 재료적 확장성 제시(3회) ▶(판매) 전통 한지공방(18개소) 수록지 및 한지문화상품(12개사) 상품 판매(67종, 15백만원) ▶(프로그램) 한지사진관 운영, 한지 상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 한지가헌 SNS운영 및 보도자료 37건 홍보		
'적막' 재개관전 사진, 인쇄매체로의 확장성	'사유의 자리' 회화 및 공예적 재료의 확장	'균형' 한지 모빌, 콜라주 작품 전시
		

- (교류) ▲(박람회) 파리 메종&오브제 <시간의 결, 한지> 부스 조성*(9.5~9.9), 공예트렌드페어 한지관 운영(12.12~15.), ▲(포럼) 한지 관련 국제포럼 <전통중이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변용> 개최(12.13.)

* 메종&오브제 부스 관람객 13,902명, 바이어 상담 10건, 매출액 1.7억원(116,610 유로)

<파리 메종&오브제 한지관 조성>	<공예트렌드페어 한지관 조성>	< 2024 한지포럼 >
		

- (연구) ▲한지 공공수매제도 타당성 조사*, ▲한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한지대전(백과사전) 재발간 기초연구' 추진

* 주요 내용 : 국내 전통한지 업체 현황 분석, 일본·중국 등 유사사례 분석, 공공수매제도 도입 요건 검토, 수매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 등

- (홍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기념 한지 홍보영상 제작, ▲한류 문화예술인 5인 협업 한지상품 개발 및 유통지원(3개소)

*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전('24.3.31. 신청, '26.12. 등재 예정)

참고 2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전통한지문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2109943)	김형동 (‘21.5.7)	■ 전통한지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전통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	· 상임위 상정 (‘21.6.21) · 임기만료 폐기
한지문화 산업진흥법안 (2006423)	김광수 (‘17.3.28)	■ 한지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한지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	· 상임위 상정 (‘17.9.19) · 임기만료 폐기